

신구조문대비표 (변경의 경우)

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문 대조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4조(거래방법)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(증서·전자통장을 포함한다) 또는 수표·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입금할 때와, 자동이체약정·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<u>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.</u>	제4조(거래방법)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(증서·전자통장을 포함한다) 또는 수표·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입금할 때와, 자동이체약정·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<u>거래하는 경우 및 등록된 생체정보(이하“바이오정보”),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(이하“무통장”)도 거래할 수 있다.</u>
제5조(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) 신설	제5조(인감, 비밀번호 등의 신고) <u>④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,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u>
제9조(이자)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,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<u>기록하여 안내한다.</u>	제9조(이자)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,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<u>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. 기록하여 안내한다.</u>
신설	<u>제9조의2 (휴면예금 및 출연)</u> <u>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(이하 “휴면예금”이라 한다)으로 본다.</u> <u>가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</u> <u>나. 거치식,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따라 “서민금융진흥원”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.</u> <u>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,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.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.</u>
제10조(지급·해지청구)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·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,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거래처가 PIN-Pad기에 직접 비밀번호	제10조(지급·해지청구) ① <u>거래처가 예금·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-Pad기에 입력하고,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<p>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 번호의 기재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거래처가 자동이체,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</p>	<p>② <u>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,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거래처가 자동이체, 전산통신기기, 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</u></p>
<p>제16조(면책) 신설</p> <p>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, 변조, 도용 등을 한 경우,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④ 거래처가 제13조제1항, 제2항,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면책)</p> <p>③ <u>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</u></p> <p>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, 변조, 도용 등을 한 경우,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⑤ 거래처가 제13조제1항, 제2항,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</p>
<p>제20조(약관의 변경)</p> <p>② <u>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에 의한 게시 2.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 3.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에 의한 통지 4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. 거래통장에 표기 6.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	<p>제20조(약관의 변경)</p> <p>② <u>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 또는 휴대전화(SMS, MMS)에 의한 통지</u> 2. <u>거래통장에 표기</u> 3. <u>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</u> 4. <u>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</u> 5. <u>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(애플슈 등)에 의한 통지</u>
<p>신설</p>	<p>제24조(위법계약의 해지)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

신설	※ 이 약관은 「 <u>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</u> 」 및 <u>도이치은행의 내부통제기준</u> 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.
----	---